

#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의회사무처

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배진석 의원 외 28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(2023년 8월 29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면, 토론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배진석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행('23.9.22.)을  
앞두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
- 지방공사 사장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 
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

##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  
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및 회부와 질의, 증인 등 출석요구에  
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
-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 
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인사청문경과 보고, 자료제출요구, 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을  
규정함(안 제12조~제15조)
- 인사청문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사청문위원의 제  
척·회피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
- 인사청문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와 행정지원 및 준용사항에  
대하여 규정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

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병기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은 법적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장과 「인사검증 협약」으로 산하기관의 일부 직위에 대하여 인사 검증을 실시하여 왔으나,
- 지난 2월 27일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특정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
- 인사청문 대상, 운영방식, 활동기간,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사 청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## □ 종합 검토의견

-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
  - 안 제3조, 인사청문 대상에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명확히 함
  - 인사검증 협약('21.4.12)에 의한 인사검증 대상 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,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이었으나,

본 조례안의 대상 기관은 위 7개 기관을 포함하여 경북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하여 11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, 위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의회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대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안 제4조,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도지사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인사청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,
  - 안 제8조,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듣고 10분 이내의 모두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 계획, 조직의 설립목적과 비전달성을 위한 계획 등 인사청문대상의 해당 직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
  - 안 제15조,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후보자의 사적정보 누출, 기타 기밀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보임
- 지방자치법 47조의2 제3항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개정된 법률안은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의

인사권 견제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으로

-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해오던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되어, 산하기관장이 해당 직위에 임명 전 실효성 있고 투명한 인사청문을 통하여
-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산하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참고로 대구광역시의회(7.31), 광주광역시의회(7.13)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음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